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95

발의연월일: 2024. 11. 26.

발 의 자:김도읍・김예지・인요한

백종헌 • 조배숙 • 장동혁

박성훈 · 김정재 · 김형동

조지연 • 구자근 • 정점식

의원(12인)

제안이유

2024년 3월부터 교육부는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적으로 지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운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정주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을 지정 및 운영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교설립부터 교원인사, 학교 시설 및 폐교 활용, 교육과정 등 지역특성 맞춤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내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등 지역 내 기관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 확보와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6 조).
- 라. 특구 운영의 성과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 15조).
- 마. 교육발전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과 학교는 설립기준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8조).
- 바. 교육발전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사. 법무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 내 학교의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

생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8조).

- 아.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에서 교육분야 규제 적용 등을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적용받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의 우선 허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대학 총장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운영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발전특구"란 지역 교육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2.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3장제1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 3.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이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절차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혹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도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우선하여 해당 규제의 적용 제외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4. "교육발전특구 협약"이란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지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특구 운영방향 등을 명시하여 지역 내 대학, 기관 등과 함께 작성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을 말한다.
- 5. "협약 기관"이란 교육발전특구 협약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 6.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이란 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협약 기관이 공동으로 지역 교육발전과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업, 규제 특례를 포함하여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 7.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이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8.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교육발전특구(이하 "특구"라한다)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이하 "선도지역"라 한다)에 특례 등을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이 법에 따라 특례 및 규제 적용 제외 등을 적용받는 사항은 이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제의 근거법률을 적용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와 선도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등 지역 내 기관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사업의 지속성 보장과 지역균형발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추가 재원을 확보·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 제5조(특구의 지정신청) ① 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라 한다)와 교육 감
 - 2. 수도권을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과 교육 감
 - 3.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접경지역의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과 교육감
 - ②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지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교육발전

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이하 "교육발전특구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1. 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 2. 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구 내 대학 및 기업 등
- 3. 특구에 적용되는 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 4. 그 밖에 특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③ 그 밖에 특구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특구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교육발전특구 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구 지정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와 구체적 지정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특구 지정의 효과 등) ① 제6조에 따라 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공동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운영계획(이하 "특구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하여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경우 특례의 내용이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장과 협의하여 특례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③ 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특구의 변경) ① 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특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구 계획 및 특구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구 계획 및 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절차를 생략할수 있다.

제9조(특구의 해제) ① 특구의 유효기간은 특구 지정기간과 동일한 것

- 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특구의 유효기 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 ② 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구의 지정해제를 교육부장 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 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 2. 해당 특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 3. 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 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교육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특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해제의 구체적 요건 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둔다.
 -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2. 특구의 지정 및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 3. 특구 협약 및 특구 계획에 관한 사항
- 4. 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 특례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 5. 제7조제1항에 따라 특구에서 신청한 특례의 부여·변경·취소· 재심의에 관한 사항
- 6. 특구 지정 평가 및 성과관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특구 지정 ·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직 위원 으로 구성한다.
- ③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가운데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그 밖에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구 관련 사무를 전담하기 위한 특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특구 사무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특구 전담기관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구 실행, 지역별 사업 운영 상황의 점검 및 조정, 전국단위 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우 수사례 발굴 및 확산, 성과관리 등의 사무를 총괄 운영하기 위하여 특구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특구 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 ① 특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특구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 역협의체를 두어야 한다.
 - ② 지역협의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특구 협약안 작성
 - 2. 특구 협약 기관 간 연계 · 협업 및 발전방향 마련
 - 3. 특구 계획 수립 및 이행 사항 점검
 -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무
 - ③ 지역협의체의 소재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재지로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특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협의체에 위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특구별 전담조직) ① 특구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사업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구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특구운영의 성과관리) ① 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방법과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규제 특례

제1절 교육발전특구와 지역혁신지원 선도지역에 대한 특례

- 제16조(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기준을 특구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수 있다.
 - 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 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특구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협약기관이 「유아교육법」 제8조의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
- 제17조(학교 안전공제 적용에 관한 특례) 특구 지정 지역 내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 외에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늘봄 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제18조(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 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 설립 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 기준을 특구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교육과정, 수업, 학년제, 교과용도서, 수업연한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특구 지정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9조(교육과정의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다문화학생 등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교육과정에따라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의 지침에 따른다.
 - ② 특구 관할 교육감은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특구 관할 교육감은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0조(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 전·입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 ③ 특구의 관할 시·도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하거나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다른 학교 종류의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1조(지역교원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특구로 지정된 지역 중 일부 지역 혹은 학교에서의 근무를 조건으로 교원 을 임용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 다.
 - ② 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의 표시과 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교원자 격을 신설하고, 양성 및 검정·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자격의 요건,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에서 「초·중 등교육법」 제21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특구 초등학교 와 중학교, 고등학교 간의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

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원 간의 교차지도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교원의 양성 및 자격, 임용,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교원자격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교장의 자격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의 개방형 공모교장 자격기준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만해당한다)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 제23조(협업교육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특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과 교사와 협약기관 전 문가의 공동 수업이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제 29조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관 전문가의 수업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 밖 교육활동을 통한 수업을 인정할 수 있다.
- 제24조(산학겸임교사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지역 사회 및 산업체 전문가 활용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겸임교사 대체비율을 정할 수 있다.
 - 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산학겸임교사의 종류 및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구 지정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 ③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

- 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소재한 기업의 임직원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이경우 그 임직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구 내 초·중등학교의 교과를 담당할 수 있다.
- ④ 특구의 시·도 교육감은 산학협력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겸임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지급할수 있다.
- 제25조(직업계고 교원 파견에 관한 특례) 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직업계고의 전문 교원 확보를 위하여 공·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 할 수 있다.
- 제26조(전문교원 확보에 관한 특례) 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직업계고의 전문 교원 확보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업계고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1.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전공 교과에 대한 전문성과 교사로서의 자질을 평가받은 자
 - 2.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대학교원
- 제27조(특구 내 학교에 대한 교원 추가배정에 관한 특례) 특구를 관할 하는 교육감은 지역교육혁신과 안정화를 위하여, 특구 내 학교에 교 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정원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추가배치할 수 있다.

- 제28조(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구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특구 내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고등학교이하 외국인 유학생 유치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제12조에 따른 의무(무상)교육기관인 경우에도 일반연수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특구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경우, 해당 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자 또는 경영자가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비용의 항목과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 제29조(지역 산업 관련 교육을 위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가 지

역 산업 관련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1. 교사 기준 면적 완화가 산업현장의 특수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며, 그 필요성이 명확히 증명된 경우
- 2. 완화된 교사 면적이 교육의 질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체 학습 공 간 및 시설을 확보한 경우
- 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가 산학 협력 교육이 가능한 교육을 활용하기위하여 「고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교사시설의 인정 범위 및 이동수업가능 요건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고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 내의 범위에서 대학의 교지 밖에 일부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0조(공유재산 양여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구 계획에 활용되는 토지는 특구 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신·증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 구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 약을 둘 수 있다.

제2절 교육 분야 규제특례 우선 허용

- 제31조(교육분야 규제제외 우선 허용) ① 특구와 선도지역에서 제3장 제1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육분야 규제 적용 제외 등을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적용받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 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의 우선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규제제외 우선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
 - 1.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

- 2. 법령에 따른 기준·요건·절차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도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 능한 경우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규제제외 우선 허용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해당 규제의 존재 여부 와 규제 적용 제외 특례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 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와 교육분야 규제제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의 존재 여부와 규제적용 제외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일정기간 해당 규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를 우선 허용할 수 있다.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의 내용이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장과 협의하여 특례의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규제제외 우선 허용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 링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두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 월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 적용 제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 적용 제외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⑦ 제4항에 따라 규제제외를 우선 허용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제5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허용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규제제외 우선 허용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제외 운영 결과를 첨부하여 해당 규제와 관 련된 법령의 정비를 교육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 다.
- ⑨ 교육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제외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규제제외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규제 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 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①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8항에 따른 요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항의 법령 정비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①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제외 우선 허용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규제제외 우선 허용에 대한 지원) 교육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서 교육분야 규제제외 우선 허용을 받아 추진되는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3조(규제제외 우선 허용 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규제제외의 우선 허용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제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규제제외 우선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제외를 우선 허용받은 경우
 - 2.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 제31조제1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4. 규제제외 우선 허용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교육부장관은 규제제외 우선 허용에 따른 제도 및 사업의 추진으로 공교육 발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추진의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규제제외 우선 허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규제제외 우선 허용이 취소된 경우, 해당 특례에 따른 제도 및 사업 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 제34조(선도지역의 지정신청) ① 선도지역을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지단체의 장과 교육감, 대학 총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선도지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구로 기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 ② 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지단체의 장과 교육감, 대학 총장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이하 "선도지역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선도지역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 2. 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선도지역 내 대학 및 기업 등
 - 3. 선도지역에 적용되는 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 4. 그 밖에 선도지역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한 사항

- ③ 그 외, 선도지역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경우 교육부장관은 선도지역 지정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 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와 구체적 지정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선도지역 지정의 효과 등) ① 제35조에 따라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공동으로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사업운영계획(이하 "선도지역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제39조에 따른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특례 등을 적용할 수있다.
 - ③ 선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37조(선도지역의 변경) ① 선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이나 제34조제2항의 선도지역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지역 계획 및 선도지역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선도지역 계획 및 선도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5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8조(선도지역의 해제) ① 선도지역의 유효기간은 선도지역 지정기 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 ② 선도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도지역의 지정해제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때
 - 2. 대학이 지역 교육의 중심역할을 더이상 수행하지 못할 때
 - 3. 대학의 지원을 통해 공교육혁신 추진이 불가능할 때
 - 4. 그 밖에 선도지역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선도지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해제의 구체적 요건 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교육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혁신위원회를 둔다.
 - 1. 선도지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2. 선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 3. 선도지역 협약 및 선도지역 계획에 관한 사항
 - 4. 선도지역 운영을 위한 규제 특례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 5. 제36조제1항에 따라 선도지역에서 신청한 특례의 부여·변경·취소·재심의에 관한 사항
 - 6. 선도지역 지정 평가 및 성과관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선도지역 지정 ·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교육혁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가운데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

- 가, 그 밖에 선도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교육부장관은 선도지역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선도지역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선도지역 전담조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 ① 선도지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선도지역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 하여 지역협의체를 둔다.
 - ② 지역협의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도지역 협약안 작성
 - 2. 선도지역 협약 기관 간 연계ㆍ협업 및 발전방향 마련
 - 3. 선도지역 계획 수립 및 이행 사항 점검
 - 4. 그 밖에 선도지역의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무
 - ③ 지역협의체의 소재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재지로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선도지역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한 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42조(선도지역별 전담조직) ① 선도지역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지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도지역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 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선도지역 운영의 성과관리) ① 선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선도지역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도지역 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장 및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선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방법과 그 밖에 교육혁신위원회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